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010-~~426~~

시행일자 1996. 3. ~~14~~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제계장	 		
기안	김철수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훈령제 835 호

1.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35 호 2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3 안)

수신 총 무 과 장

제목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6. 3. 20.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35 호 (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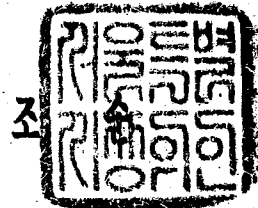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증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96. 1. 15. 서울시 직제개편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위원 등의 직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중 도로시설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직명 변경(안 제3조제2항).

나. 재심청구에 있어서 부위원장인 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인 세정과장, 시민생활과장의 직명을 변경(안 제1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개정}안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인사과장, 도로시설과장, 녹지와장, 비상계획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 을 “인사과장, 녹지와장, 비상계획과장, 도로관리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 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국민운동지원과장” 을 “사회진흥과장” 으로 “법무담당관, 세정과장, 시민생활과장, 민방위과장” 을 “법무담당관, 민원담당관, 세무행정과장, 민방위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